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조계원 · 양문석
최혁진 · 손 솔 · 박지원
박용갑 · 문진석 · 김남희
이재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,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,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,027명 증가하였으며,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.3명으로 2022년 대비 8.5%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.

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, 예산 확보력,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).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대통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무총리가”를 “대통령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국무총리가”를 “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자살예방정책위원회)	제10조의2(자살예방정책위원회)
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국무</u> <u>총리</u>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 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	① ----- ----- <u>대통</u> <u>령</u>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장은 <u>국무총리</u> 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④ ----- <u>대통령</u> 이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<u>국무총리</u> 가 위촉하는 사람	2. ----- ----- <u>위원장이</u> -----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